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

- (법적근거) 자원재활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 (주요규제 사항)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① 집단급식소, ②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 1회용 종이컵 '22.11.24일부터 규제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22.11.24일부터 규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 '22.11.24일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 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2. ③ 식품제조·가공업, ④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대규모점포*외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 사용억제 폐지('08.6.30)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점포(유통산업발전법)	
3. ⑤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숙박업(객실 7실 이상)은 제외('09.7.1)
4. ⑥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⑦ 운동장, ⑧ 체육관, ⑨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응원용품 ※ '22.11.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⑩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22.11.24일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광고선전물
7. ⑪ 금융업, ⑫ 보험 및 연금업, ⑬ 증권 및 선물 중개업, ⑭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⑮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⑯ 기타 교육기관, ⑰ 영화관 운영업, ⑱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광고선전물
⑲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내용(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시행령 개정('21.11.23) * '22.11.24. 시행

- <현행>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추가>
11.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 시행규칙 개정('21.12.31) * '22.11.24. 시행

구 분		현 행	개 선
식품 접객업 · 집단 급식소	사용 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광고물·선전물	-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 금속박 등) - 현행과 같음 -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 1회용 봉투·쇼핑백(제과점업)
	무상 제공 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제과점업)	- 1회용 봉투·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 제외)
대규모 점포	사용 억제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광고물·선전물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1회용 우산 비닐
체육 시설	사용 억제		- 합성수지재질 1회용 응원용품
	무상 제공 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 제외)
도매 및 소매업	사용 억제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무상 제공 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제외)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제외)